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2020. 11. 1.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인천본부(이하 “인천본부”라 한다)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대출실적)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인천본부 담당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제3조(지원대상 중소기업) ①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으로 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추천기업
6.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7. 전입기업
8. 수출관련기업
9.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
10.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1. 명절·재해 자금 필요기업 등
12. 기타 지원기업
13.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①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특별지원부문, 전략지원부문 및 일반지원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특별지원부문 한도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③ 전략지원부문 한도는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부문 한도를 제외한 일부를 지역별 경제사정, 금융기관의 대출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일반지원부문은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부문 및 전략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제5조(특별지원부문) ① 제3조 제1항 제13호(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를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본부장은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특별지원부문 한도를 소진하여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을 일반지원부문으로 전환 배정한다.

제6조(전략지원부문) ① 제3조 제1항 제6호(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제10호(농림수산업 관련기업)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인천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전략지원부문은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별표 1>에서 정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과 인천광역시로부터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 자금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대출 실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전략지원부문 한도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을 일반지원부문으로 전환 배정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

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제5조 제1항(특별지원부문) 및 제6조 제1항(전략지원부문)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 ② 일반지원부문은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비례 배정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4항에 따라 배정된 경우 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원을 적용한다.
- ④ 제5조 제3항은 일반지원부문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 ⑤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71101업종, 71102업종, 71201업종, 71202업종, 861~862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일반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⑥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그리고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본부 중소기업자금을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일반지원부문에 재배정한다.

제8조(지원일몰제도) ①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대출의 최초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 지원금액(지원기간 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
- ④ 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지원자금) 본부장은 제3조 제1항 제11호(명절·재해자금 필요기업 등) 및 제12호(기타 지원기업)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대기업(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대출금
2.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3.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4.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대출 제외)
6.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7.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8. 부동산업, 유흥업 등 <별표 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제11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인천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4.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5.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6. 창업중소기업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

②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한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업체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산정한 당월중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점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

제13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즉시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수 이내에서 위규사유별 배정한도 감축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¹⁾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²⁾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주: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 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14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2003년 7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 2004. 6. 16.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6월 16일부터 시행(2004년 7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기 지원 중인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만기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지원한다.

부 칙 < 2004. 11. 23.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2005년 2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 2005. 8. 2.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2005년 10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 2006. 8. 8.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2006년 10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 2006. 11. 9.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한도배정은 금융기관의 2006년 11월말 실적이 반영되는 2007년 1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 2007. 6. 21.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한도배정은 금융기관의 2007년 7월말 실적이 반영되는 2007년 9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기 지원중인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만기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지원한다.

부 칙 < 2008. 6. 5.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한도배정은 금융기관의 2008년 7월말 실적이 반영되는 2008년 9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 2010. 8. 30.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한도배정은 금융기관의 2010년 9월말 실적이 반영되는 2010년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전에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6조에 의한 누적 지원기간 및 누적 수혜실적의 기산일은 200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 2011. 5. 23.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한도배정은 금융기관의 2010년 6월말 실적이 반영되는 2011년 8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 2012. 4. 20. >

제1조(시행일) ①이 기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2년 8월 첫영업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인천본부 총액한도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 2013. 7. 30.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 8. 1.부터 시행한다. 단, 한도배정은 금융기관의 2013.8월 취급분 실적이 반영되는 2013.10월 한도 배정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 2014. 8. 28. >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 2014. 10. 1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 1. 26. >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2015년 2/4분기 전략지원부문으로 배정된 사전한도는 종전 기준에서 정한 인천광역시 선정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의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 2015. 4. 28. >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 2015. 5. 8. >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 6. 25. >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년 11월 2일(2015년 9월 대출취급실적)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30>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1월 1일(2016년 9월 대출취급실적)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인천본부장이 부여한 금융기관별 사전한도는 2017년 12월 배정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9. 1.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2019년 5월 한도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8.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2019년 11월 한도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4월 1일(2020년 6월 한도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1월 1일(2021년 1월 한도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실적 선정기준

전산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
A1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며 창업 후 3년이내인 제조업* 영위기업(금융기관 결제모점장이 확인<별지 6호서식>한 경우) <li style="padding-left: 20px;">*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 ~ 33
A2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A3	혁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INNO-BIZ기업(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및 MAIN-BIZ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기관 중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술평가기관이 발급한 기술평가인증서 보유 중소기업*(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 금융기관이 대출금원장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임을 명기하거나 대출취급점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확인한 경우에 한함 - 특허권* 보유 기업(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시점 기준으로 등록료를 납부한 유효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보유 기업(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시점 기준으로 등록료를 납부한 유효한 실용신안권 - 최근 2년 이내(대출시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산학연 Collabo R&D’사업 참여 기업
A4	녹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부여제품 생산업체
A6	추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비전기기업(인증서 발급 5년 이내)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및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1>의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및 수출관련기업 * 창업후 7년 이내 기업 포함 - <별표 1-1>의 해당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중 영리법인 - 인천광역시로부터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 자금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최근 2년 이내(대출시점 기준) 협약과제를 완료한 기업
A9	전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으로부터 한국은행 인천본부 담당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A10	수출관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A11	소재·부품· 장비 생산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
A14	명절 및 재해자금 필요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적 자금수요, 재해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지원하는 기업
A15	기타 지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지원부문에 해당되지 않는 지원기업으로서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업
A16	경기부진· 경기민감 업종영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²⁾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11) 2) 해운업(501~502) 3) 도소매업(45~47) 4) 운수업(49, 51~52) 5) 음식·숙박업(55~56) 6) 여행업(752) 7) 여가업(90~91)

주: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별표 1-1>

미래성장유망산업 및 제조업내 5대 업종

산업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미래 성장 유망 산업	바이오 산업	화장품 제조업	2042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5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 제품 제조업	21300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3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30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관광 산업	관광 산업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단,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희업,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	-	
			물류 산업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운송업	501
				항공운송업	51
				보관 및 창고업	5210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취급업	5294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				
제조업내 5대 업종	제조업내 5대 업종	1차 금속 제조업	24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2592, 2593, 2594, 2599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26299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291(2919 제외)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292(2925, 2929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04 제외)		

<별표 2>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 업종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점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주점업
노래방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무도장	91291 무도장운영업
도박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용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안마업	96122 마사지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업 ¹⁾	7512 인력공급업

주: 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시에 한정하여 적용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년 월 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

(인)

I. 신청내용

대출취급액	백만원	대출기간	~
금리	고정 : %	대출계좌번호	
	변동 : % (기준금리 $\Delta\Delta$ + 가산금리 $\square\%$)	자금종류	<input type="checkbox"/> 운전자금 <input type="checkbox"/> 시설자금
채권보전형태	<input type="checkbox"/> 순수신용 <input type="checkbox"/> 담보 <input type="checkbox"/> 보증기관 보증 <input type="checkbox"/> 혼합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대환 <input type="checkbox"/> 만기연장 <input type="checkbox"/> 지원연장
지원부문	$\Delta\Delta\Delta\Delta$ (신청 전산코드 :)	전략지원부문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취급점 및 담당자	$\bigcirc\bigcirc$ 지점, $\bigcirc\bigcirc\bigcirc$ (☎ , FAX)	특별지원부문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I.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확인	(인)
주소	(☎ , FAX)		
자금담당자		e-mail	
업종명 (KSIC 5자리코드)	$\Delta\Delta\Delta\Delta$ ($\square\square\square\square\square$)	신용등급 (은행자체 등급)	
자금용도		설립일	
주생산품		사업자등록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법인등록번호	
매출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총자산	백만원	(납입자본금)	(백만원)

III. 첨부서류

1. 대출금원장(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 1부
4. 기타 한국은행이 요청한 서류. 끝.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 (인)

(백만원, 연%)

신청정보				업체현황									대출내역										
일련 번호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¹⁾	신청 사유 ²⁾	지원 부문 ³⁾	지원부문 여부 ⁴⁾	신용 등급 ⁵⁾	업종 ⁶⁾	업체 소재지 ⁷⁾	업체명	사업자 구분 ⁸⁾	법인 등록번호 ⁹⁾	사업자 등록번호 ¹⁰⁾	대표자 성명	자금 구분 ¹¹⁾	취급 점포명	취급점 소재지 ⁷⁾	대출일 ¹²⁾	만기일 ¹³⁾	대출 기간	대출 금액	금리 ¹⁴⁾	채권 보전 ¹⁵⁾	

- 주: 1) 개별 대출건에 대한 고유 계좌번호, 업체당 "신규취급실적" 건별로 기재(업체당 신규취급실적이 한건 이상인 경우 건별로 관리번호 부여)
- 2) "신규" / "대환" / "만기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재("대환" 또는 "만기연장"으로 기재한 경우 취급실적 변동보고서에 기존 취급분의 변동사유를 "만기상환"으로 하여 반드시 보고)
- 3) 지원부문별 코드는 "한국은행인천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참조하여 기재
- 4) 일반지원부문 해당시 "0", 전략지원부문 해당시 "1",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2", 특별지원부문 해당시 "3",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4"로 기재
- 5)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기재, 금융기관이 SOHO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에 별도의 신용등급을 부여할 경우 SOHO 대출은 "SOHO"라고 표시
- 6)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최종개정분) 5자리 숫자 기재
- 7) 광역시 지역은 시 단위, 일반 시 및 군 지역은 도/시·군 단위로 기재 : 예) 인천, 경기부천
- 8) "개인" / "법인" 으로 구분하여 기재
- 9) "-" 생략, 법인사업자만 법인등록번호란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란으로 남겨둠)
- 10) "-" 생략
- 11) "시설" / "운전" 으로 구분하여 기재
- 12) 신청사유가 "대환"인 경우 대환일, 기한연장인 경우 당초 상환기일을 기입
- 13) 신청사유가 "대환" 및 "만기연장"인 경우 대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 새로이 산정된 상환기일
- 14) 대출취급시 적용금리를 기재
- 15) "순수신용"(개인 및 법인에 의한 보증대출 포함) / "담보" / "보증"(신용보증기관 및 정부 보증) / "혼합"으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 (인)

(백만원, 연%)

변동전 보고내역							변동보고내역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¹⁾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자금 구분	취급 점포명	변동전 잔액	변동 일련번호 ²⁾	변동 사유 ³⁾	변동사유 발생일 ⁴⁾	변동 처리일 ⁵⁾	변동 금액	변동후 잔액	비고

주: 1) 변동이력 관리를 위해 기존취급건의 각행 관리번호를 기입

2) 개별 대출건에 대해 변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변동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3) "만기상환"("대환" 또는 "만기연장" 건도 기존 취급분은 "만기상환"으로 처리) / "중도전액상환" / "중도일부상환" / "지원종료" / "휴폐업" / "최종부도" /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타의 경우 비고란에 상세사유 기재

4) 만기일자, 상환일자, 휴폐업일, 최종부도일 등(다만 지원기간 종료로 한국은행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말일로 기재)

5) 보고 대상월의 처리일자를 기입(예 : 3월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는 3월의 처리일자만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

아래 대출은 기술평가인증서를 대출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대출임을 확인합니다.

— 업 체 명 :

— 대 표 :

— 사업자번호 :

— 계좌번호 :

— 대 출 일 :

— 대출금액 :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창업중소기업 확인서

(20 년 월 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앞

_____은행(회) 부(점)장 (인)

아래 업체는 귀 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서 정하는‘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임을 확인합니다.

점포명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	업종코드	설립일자	비 고
계	건					

주: 1) 운용기준 제4조 제1항 1호의 창업기업*으로 신청시 작성

*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조업 영위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33)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복합업종으로 표기된 경우 제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

(제외대상)

- 위장창업 및 사업승계의 경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체(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탱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